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194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백인광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구나율, 안주현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757,4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전제사실

- 원고는 2020. 10. 31. 현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에 대하여 143,632,500원의 공사대금 잔여 채권이 있었다.
- 피고는 C로부터 2021. 8. 2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2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2021.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C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2021회합165)을 하여 2022. 2. 3.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대표이사 D이 C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2. 10. 20.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주위적 청구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추가하였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대위소송)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변제조로 C의 대표이사 D의 근저당채무 85,978,082원 상당을 변제한 것은 C이 주요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C이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채권인 143,63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생재단에 관하여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C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는 더 이상 C이 아닌, 관리인인 D에게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채권자대위소송은 이미 관리인 D에게 속하게 된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그 권리가 여전히 C에 남아 있음을 전제로 C을 대위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을 제2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회생사건에서 ‘약식 실사가치 평가’를 제출하면서 자산을 55,810,102,291원으로, 부채를 51,683,690,135원 각 산정하였는데, 자산 중 17,895,516,569원을 채권으로서 공사미수금 6,175,423,989원, 단기대여금 7,738,491,181원, 미수수익 657,909원, 미수금 1,109,995,240원, 선급금 2,870,948,25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C의 대표이사는 2021. 12. 14. 회생사건에서 채권 중 매출채권 13,451,000,000원, 미수금 1,218,000,000원이 회수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회생사건신청일(2021. 12. 1.)경 사실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무자력)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약 3~4개월 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2021. 8. 26.)경에도 그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무자력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의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는 매도인 측 및 매수인 측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점, ③ 매매대금의 액수는 당시의 시세에 비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시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즉, 선의)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채권자취소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